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
합	계	8,515,984,370	8,013,827,852	502,156,518
일	반 회 계	7,620,535,909	7,131,469,835	489,066,074
특	별 회 계	895,448,461	882,358,017	13,090,444
	기 타 특 별 회 계	895,448,461	882,358,017	13,090,444
	농 어 촌 주 택 사 업	4,300,000	4,300,000	-
	의 료 급 여 기 금	554,492,978	554,492,978	-
	동 부 권	36,499,894	32,749,894	3,750,000
	학 교 용 지 부 담 금	9,735,306	9,735,306	-
	소 방	289,664,629	280,324,185	9,340,444
	특정자원분·특정시설 분 지역자원시설세	755,654	755,654	-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48,751,42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187,7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